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1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민철·김남국·김병주

김홍걸 • 민형배 • 신현영

오영환 · 이성만 · 이수진

이용우 • 이원택 • 임오경

임호선 · 장경태 · 장철민

정청래 • 주철현 • 최혜영

한준호 · 홍성국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

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1조의2).

법률 제 호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 제목 중 "노임"을 "임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노임"을 "임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노임"을 "임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<u>노임</u> 에 대한 압류의	제21조의2(<u>임금</u> 에 대한 압류의
금지)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	금지) ①
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	
그 공사(하도급한 공사를 포함	
한다)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	
야 할 <u>노임(勞賃)</u> 에 해당하는	<u>임금</u>
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.	.
② 제1항의 <u>노임</u> 에 해당하는	②임금
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